## 한국지방세연구원 2024년 출연금 동의의 건

의 안 번 호 2143

제출연월일: 2023. 8. 25.

제 출 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### 1. 제안이유

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2024년도 울산광역시 중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세제 개편,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·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지급

- 나.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: 6,410천원
- 다. 산출기준
  - 가)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
    - 2022년도 보통세 세입징수액 53,408,537천원×1.2/10,000
  - ※ 출연비율 인하: 2020년 1만분의 1.5 ⇒ 2021년 1만분의 1.3⇒ 2022년 이후 1만분의 1.2

## 3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- 나.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- 4. 의 결 안: 따로 붙임

## 5. 참고사항

- 가.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- 나. 출연금 및 「지방재정법」 관련 법령

#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

### 1. 사업개요

가. 사 업 명: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

나. 출 연 액: 6,410천원(구비)

다. 출연기한: 매년 3. 31.

### 2. 출연근거

가.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

< 출연의 근거:「지방세기본법」 >

- (동법 제152조 제1항) <u>지방자치단체는</u> 지방세 연구·조사 등을 위하여 매년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여야 함
- (동법 제152조 제3항) <u>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</u> 제1항에 따른 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봄

## 3. 산출기초

가. 출연액: 6,410천원

나.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.2/10,000를 출연

- 2022년 보통세 세입징수액 53,408,537천원×1.2/10,000

### 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: 천 원)

구 분	합 계	2020년	2021년	2022년	2023년
출연금	22,250	5,680	5,177	5,662	5,731

※ 출연비율 인하: 2020년 1만분의 1.5 ⇒ 2021년 1만분의 1.3⇒ 2022년 이후 1만분의 1.2

58 (제258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
#### 4. 출연대상

- 가. 기 관 명: 한국지방세연구원
  - 1) 설립일자: 2011. 2. 28. (개원: 2011. 4. 20.)
  - 2) 설립근거: 「지방세기본법」 제151조
  - 3) 소 재 지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
  - 4) 조 직: 5실 1사업단 5센터
- 나.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: 붙임참조
- 다. 2023년 주요사업 내용
  - 1) 지방재정 · 세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
    - 연구과제 수행: 총 109건
    - 연구성과 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조직 운영
    - 주요 자치단체 의회·시도연구원과 공동 학술행사 개최
    - 정책방향 제시 및 주요 이슈를 다루는 간행물 발간
  - 2) 지방자치단체 협력·지원 사업 추진
    - 지방세무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
    - : 2023년 23개 교육과정, 65회 운영, 6,300명 교육 계획
    - ※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병행 실시 중
    -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
    - 세정실무 정보제공을 위한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
    - 지방세정 협력 및 지원

#### 5. 기대효과

- 가.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
- 나. 지방재정·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

# 한국지방세연구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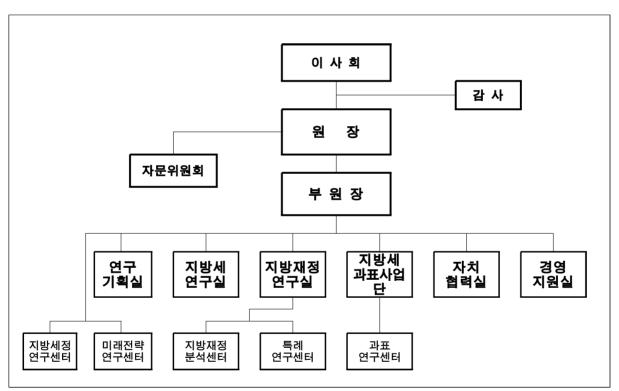
○ 총 인원 : 71명

(2023.8.17일자 기준)

구	분	계	원 장	부원장	연구직	관리직	전문직	사무직등
정	원	88명	1명	1명	56명	2명	5명	23명
현	원	71명	1명	1명	44명	2명	3명	20명
총인	인원	85명	정원외 인원 14명 (파견공무원 12, 청사관리원 2)					

**※** 연구직(44명) : 연구위원직 22명, 연구원직 16명, 조사분석직 6명

## ○ 조직 및 인원 : 5실 1사업단 5센터



○ 예산 : 176.9억원

(단위: 억원)

수 입		지 출			
출연금	수탁 등	사업비	인건비	경상경비	시설비 등
123.8	53.1	77.5	81.1	9.8	8.5
(70%)	(30%)	(44%)	(46%)	(5%)	(5%)

\* 출연금 :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.2

· ('20 이전) 1만분의 1.5 → ('21) 1만분의 1.3 → ('22) 1만분의 1.2

## 60 (제258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
# O 임원 명단 및 임기

구 분	성 명	직 함	임 기
이사장	백재현	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	2020.12.22.~2023.12.21.
정시야	박우량	전라남도 신안군수	2023.2.28.~2024.2.27.
원 장	강성조	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	당연직
이 사	진명기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관	당연직
이 사	박일호	경상남도 밀양시장	2023.2.28.~2024.2.27.
이 사	류규하	대구광역시 중구청장	2023.2.28.~2024.2.27.
이 사	이남철	경상북도 고령군수	2023.2.28.~2024.2.27.
이사(선임예정)	한영희	서울특별시 재무국장	2023.8.30.~2024.8.29. (예정)
이사(선임예정)	이홍준	세종특별자치시 자치행정국장	2023.8.30.~2024.8.29. (예정)
이사(선임예정)	황철호	전라북도 자치행정국장	2023.8.30.~2024.8.29. (예정)
이사(선임예정)	허문정	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	2023.8.30.~2024.8.29. (예정)
이사(선임예정)	박관규	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	2023.8.30.~2024.8.29. (예정)
감 사	이현정	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	당연직
감 사	강현도	경기도 오산시 부시장	2022.2.28.~2024.2.27.

# 출연금 관련 법령

#### 지방세기본법

제151조(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·운영)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·조사·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·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(이하 "지방세연구원"이라 한다)을 설립한다.

제152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·운용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·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·운용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(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,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)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.

-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, 용도,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
####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제94조(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)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"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.<개정2019.12.31., 2020.9.8.>

- 1. 1만분의 1.2
- 2. 1만분의 0.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
-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.
  - 1.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
- 2.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,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·평가
  - 3. 지방세의 연구·홍보
  - 4.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
  - 5.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

- 62 (제258회-행정자치위제3차부록)
-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.
-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.
-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.

#### 지방재정법

제17조(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·단체에 기부·보조,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. 다만,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

- 1.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
- 2. 국고 보조 재원(財源)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
- 3.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
- 4.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"공공기관"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.
  - 1.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
  - 2.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